주요 개정 내용
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3-252호(2023.10.30.) 관련 -

1. 관련근거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13호(2022.12.29.) 「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 급여에 관한 기준」
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3항 개정(대통령령 제33553호, 2023.6.20. 공포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0호(2019.7.9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 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 개정

2. 주요 개정 내용

O 항목 확대 (총 30항목)

구 분	코 드	내 역
심사불능 (4항목)	16-21	조혈모세포이식 진료기간 초과 명세서 착오청구
	26-48	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초진 외래명세서(특정기호 F027) 착오청구
	63-09	요양병원 장기환자 정액입원명세서에 L항 81-95목 기재누락
	98-60	신포괄 가산수가 산정착오
심사조정 (26항목)	В	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- 병문안관리기준 신고,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기관,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 및 환자안전활동 실시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 등 관련 4항목
	В	감염예방관리료 -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 지정일자 및 전국의료관련 감시체계기관 지정일자 비교 초과분 조정
	В	가정간호기본방문료 - 간호사 면허번호 미기재로 조정 등 관련 2항목
	В	입원환자, 의원급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– 인정약제 없이 산정된 의약품관리료 조정 등 관련 2항목
	В	입원환자 안전관리료 - 보안전담인력 인정일수 비교 조정 등 관련 7항목

구 분	코 드	내 역
	В	진료기간 내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미존재 조정
	В	검체검사 질가한 현황 비교하여 조정 등 관련 2항목
	В	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- 자가투여약제 미존재 조정
	В	MM010(표층열치료)과 MM020(심층열치료)을 동일날 실시한 경우 MM015(표층열치료(심층열동시)) 산정하므로 산정횟수 비교 조정
	В	마취료, 처치 및 수술료 등 야간가산 -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0(야간가산) 미기재로 조정 등 관련 2항목
	В	혁신의료기술 실시기관 미해당으로 조정
	В	보호자 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한 경우 산정하는 진찰료로 주사 행위료 조정
	В	[한방] 처방조제료 약제 없이 산정하여 조정

○ 항목 삭제 (총 65항목)

구 분	코 드	내 역
심사불능 (2항목)	16-06	서면 명세서의 처방전 총 처방일수 기재누락
	23-51	약국 처방조제 서면 명세서의 처방전 교부번호 중복
심사조정 (63항목)	В	원격협의진찰료 — 시설, 장비현황 미존재로 조정 등 관련 9항목
	В	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- 입원기간 비교하여 병문안관리기준 유효기간 불일치로 조정 등 관련 4항목
	В	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- 별도 보상 불가한 요양기관으로 의사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료 가산 조정(2020.12.31.까지)
	В	회송료 — 건강보험 2단계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착오 산정해 조정
	В	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— 의료급여 요양기관종별(제3차 의료급여기관) 비교하여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코드로 조정

구 분	코 드	내 역
	В	가정간호 기본방문료 — 가정간호실시기관에 가정간호사 미존재로 조정 등 관련 5항목
	В	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-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(기타내역)에 "C/개방형 클리닉" 미기재로 조정 등 관련 7항목
	В	요양병원 중환자실 입원료 — 간호인력 신고현황 비교하여 해당 간호 등급에 따른 입원료로 조정
	В	입원환자 안전관리료 — 요양기관종별 비교하여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서 산정하여 조정 등 관련 10항목
	В	진단검사분야 검체검사 질가산 등급 신고현황 비교하여 조정
	В	선천성 악안면 기형 -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4(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료대상자 등록번호) 미존재 또는 착오기재로 조정 등 관련 5항목
	В	[치과]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(AB001, AB002) - 인증조사 미 신청 기관으로 조정 등 관련 7항목
	В	[치과] 요양병원 중환자실 입원료 간호관리료 차등제 — 입원기간 비교하여 해당되는 간호등급으로 조정
	В	[한뱅] 가정간호기본방문료 — 가정간호실시기관 아니므로 조정 등 관련 3항목
	Е	핵산증폭 - 2018.12.31. 이전 중환자실 입원 중 산정 시 조정

3. 시행일자

○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